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4. 28.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14호로 2025년 4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구민상 시상 정원 확대 및 부문 정비, 표창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구민상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민상 시상 정원 확대 및 부문 정비(안 제3조 및 제5조)
- 나. 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 정비(안 제8조 및 제9조)
- 다. 수여사실 확인서 발급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 라. 시상의 취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0조의3)
- 마.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의견 있음

- 의견: 안 제20조의3 시상의 취소 기준의 ‘부도덕한 행위’라는 표현이 광범위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므로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

- 상기 의견을 반영하여 문구 추가

· 기존: 부도덕한 행위로 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 변경: 사회적 지탄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부도덕한 행위로 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라. 입법예고(2025. 3. 27. ~ 4. 16.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일부 개정 배경 및 취지

- 우리 구(區)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하며 구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영등포구민상과 모범구민포창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민상 시상 정원 확대, 부문 정비, 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과 시상의 취소에 관한 조항 신설 등 조항을 정비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민상 및 표창의 종류)</p> <p>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단체 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한어버이상 2. 효행상 3. 봉사상 4. 체육상 5. 문화예술상 6. 교육상 7. 환경상 8. 지역공헌상 9. 복지상 <p>②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패), 감사장(패)의 3종으로 한다.</p> <p>제5조(심사기준)</p> <p>① 구민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한어버이상”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도 가족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자 2. “효행상”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자 <p>(이하생략)</p>	<p>제3조(구민상 및 표창의 종류)</p> <p>①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각 부문별 2명(단체 포함) 이내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u>다만, 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4명(단체 포함)까지 시상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모범가족상</u> <u>2. 봉사상</u> <u>3. 체육상</u> <u>4. 문화예술상</u> <u>5. 교육상</u> <u>6. 환경상</u> <u>7. 지역공헌상</u> <u>8. 복지상</u> <p>② <u>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표창장: 구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구민과 단체</u> <u>2. 상장(패): 체육, 경연, 훈련, 교육 등 각종 행사 때 성적이 우수한 자</u> <u>3. 감사장(패): 구정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구민</u> <p>제5조(심사기준)</p> <p>① 구민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모범가족상”은 가족 간에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며 가정과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자</u> <p>(이하생략)</p>

-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구민상 시상 정원 확대와 부문 정비 내용을 규정하였음.

- 시상 인원 관련하여 “봉사상”, “지역공헌상”, “복지상”의 경우 최대 4명까지 시상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구민상 부문 관련하여 9개 부문으로 운영되던 것을 “장한어버이상”과 “효행상”을 삭제하고 대신 “모범가족상”을 추가하여 8개

부문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시상 종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구본청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 2명</p>	<p>제8조(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생략) 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u></p> <p>1. 시상 종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u>자</u>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3. 구본청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 2명</p>
<p>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양성평등기본법」 과 「서울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신설)	<p>제20조의2(수여사실 확인서 발급) <u>표창장·상장·감사장 및 패 등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구민상 수여사실 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표창 수여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u></p>
(신설)	<p>제20조의3(시상의 취소) ① <u>수상자 중에서 해당 공적의 사실 등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정도의 중대한 부도덕한 행위로 상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제8조 또는 제14조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라 시상이 취소된 경우, 수상자는 상을 반납해야 한다.</u></p>

- 안 제20조의2에서는 수여 사실 확인서 발급에 관한 조항을, 안 제20조의3에서는 시상 취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구민상 수여사실 확인서) 및 별지 제4호서식(표창 수여사실 확인서)를 신설하는 내용임.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민상 부문별 경쟁률 차이가 커서 특정 부문의 경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후보자가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9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민상 부문을 8개 부문으로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우리 구(區) 구민상 후보자 접수 경쟁률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장한어버이상”은 평균 경쟁률이 0.5:1로 시상 인원에 못 미치는 보완하고자 “장한어버이상”과 “효행상”을 삭제하고 대신 “모범가족상”을 추가하는 개정 사항이며 이는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수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3년 평균 경쟁률이 2:1이 넘어가는 “봉사상”, “지역 공헌상”, “복지상”의 경우 시상 인원을 유동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보다 폭넓게 모범 구민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우리구 구민상 접수 및 수상 현황(최근3개년)】

접수현황 부문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경쟁률
장한어버이상	0	2	1	0.5:1
효행상	2	4	2	1.3:1
봉사상	5	4	11	3.3:1
체육상	3	1	2	1:1
문화예술상	2	2	2	1:1
교육상	2	2	2	1:1
환경상	2	3	2	1.2:1
지역공헌상	3	6	12	3.5:1
복지상	2	4	7	2.2:1

- 또한 8개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 2명(예외적으로 부문별 4명)을 시상하는 규모는 서울시 내 타 자치구 시상 규모와 비교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타 자치구 관련 조례·규칙 현황】

연번	자치구	법령 종류	구민상 부문수	시상 인원
1	강 남 구	조례	13개	부문별 1명
2	강 동 구	조례	6개	부문별 1명 ※ 사회발전·봉사부문은 개인1명, 단체1명 각각 선정
3	강 북 구	조례	8개	제한 기준 없음
4	강 서 구	조례	5개	부문별 1명 ※ 공적이 우수한 후보자가 많은 부문은 2명 조정 가능
5	관 악 구	조례	7개	부문별 1명
6	광 진 구	조례	3개	부문별 1명
7	구 로 구	조례	13개	부문별 1명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
8	금 천 구	조례	5개	제한 기준 없음
9	노 원 구	조례	9개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문 추가 가능	부문별 1명 ※ 공적이 우수한 후보자가 많은 부문은 수 조정 가능
10	도 봉 구	조례	5개	부문별 1명 ※ 사회봉사 부문은 개인1명, 단체 1명 각각 선정
11	동대문구	규칙	7개	부문별 2명
12	동 작 구	규칙	7개	부문별 2명 ※ 총 10명 이내
13	마 포 구	규칙	7개	부문별 3명
14	서대문구	조례	4개	부문별 1명
15	서 초 구	규칙	5개	부문별 1명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동 시상 가능
16	성 동 구	조례	7개	제한 기준 없음
17	성 북 구	조례	5개	제한 기준 없음
18	송 파 구	조례	8개	부문별 2명
19	양 천 구	조례	8개	부문별 1명
20	용 산 구	조례	8개	제한 기준 없음
21	은 평 구	조례	6개	부문별 1명 ※ 특별상은 공동시상 가능
22	종 로 구	규칙	9개	부문별 1명 ※ 호행 및 선행부문 2명으로 하되 청소년 포함
23	중 구	조례	7개	제한 기준 없음
24	중 랑 구	조례	4개	제한 기준 없음

- 더불어 표창 수여 후 수상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수상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4. 28.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15호로 2025년 4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의 구체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 가. 통·반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10조제3항)
- 나. 반장 통신비용 지원 근거 신설(안 제10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개선 의견 있음

- 개선의견: 안 제10조제3항 통·반장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 제시

- 수용여부: 수용

3) 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5. 3. 27. ~ 4. 16.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일부 개정 배경 및 취지

- 통·반장 제도는 주택에서 아파트 위주로 주거단지 형성, 인터넷 등을 통한 간편한 민원 접수 등의 환경적 변화로 인해 그 기능이 축소 되어가고 있었으나
-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식지가 증부(9만 →15.4부, 세대수의 약 80%)되어 이의 효율적 배부를 위해 통·반장에게 선별적 우편함 투입과 같은 임무를 부여하는 등 배부 방식의 개선을 통한 조직의 활성화를 계획 중임.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러한 임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의 최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통·반장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 등 지역 내에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편의 제공)</p> <p>① 구청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적 장부의 무료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 이용 등 통·반장의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0조(편의 제공)</p> <p>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주민과의 접촉을 수반하는 통·반장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④ <u>구청장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u></p>

-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통·반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을, 안 제4항에서는 반장에게 통신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현재 우리 구(區)의 통·반장 임명 현황을 살펴보면, 통장은 정원 591명 중 97.3%인 575명이 위촉된 반면 반장은 정원 4,985명 중 54.9%인 2,736명만이 위촉되어 있음.
- 통·반장 활동보상금¹⁾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운용의 균형 확보를 위해 금액 기준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통·반장의 처우개선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시행하는 추세임.

【서울시 타 자치구 통·반장 지원 규정 현황】

대상	통신요금	예방접종
통장	-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동작구, 중랑구
반장	서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종로구

1) 통반장 활동보상금(「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4」)

별표 4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① 경비성격 :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기준액

- 통·리장 : 기본수당 월 4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식지 증부와 같은 환경적 변화를 계기로 통·반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또한,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구성인원의 증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행정 안내 사항의 신속한 전달 효과 및 다수의 주민 접촉으로 인해 발생할 감염병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면 통신 요금이나 예방 접종을 지원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내용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여겨짐.
- 지원 사항으로는 예방 접종비는 예방 접종 무료 대상자(1960. 1. 1. 이전 출생자: 예방접종 무료 대상)를 제외한 모두에게 1인당 연 4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통신 요금은 반장 전원에게 1인당 연 50,000원을 지급할 예정으로써 예방 접종비에 39,880천원과 통신 요금에 149,550천원을 추산하여 총 189,430천원의 비용을 산출함.(비용추계서 참고)
- 다만, 반장 활동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책의 성격을 가지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지원책이 반장 제도의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 영등포구 반장에 대한 지원사항이 확대되어 추가 세출 발생

- 안 제10조제3항 신설: 통·반장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사항
- 안 제10조제4항 신설: 반장에 대한 통신비용 지원 사항

2. 비용추계 기준

- 지원대상: 영등포구 반장 전원 ※ '25. 3. 기준 현원: 2,736명
- 지원금액
 - 예방접종비: 1인당 연 40,000원(예방접종 무료 대상자 제외 전원 지급)
 - 통신요금: 1인당 연 50,000원(반장 전원 지급)

3.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합 계	189,430	
통신요금	149,550	50,000원(연간) × 4,985명(정원) × 60% = 149,550천원
예방접종비	39,880	40,000원(연간) × 4,985명(정원) × 20% = 39,880천원

- 통신요금: 반장 현 위축률(정원의 약 55%) 및 지원사항 확대에 따른 현원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원의 60% 산출
- 예방접종비: 반장 현원 중 1960. 1. 1. 이후 출생자 약 18% 추정, 현원 증가 및 생년월일 자료 오류 가능성 고려 정원의 20% 산출
 ※ 1960. 1. 1. 이전 출생자: 예방접종 무료 대상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연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						
	○						
	소계(a)						
세출	○통신요금	149,550	152,541	155,592	158,704	161,879	778,266
	○예방접종비	39,880	40,678	41,492	42,322	43,169	207,541
	소계(b)	189,430	193,219	197,084	201,026	205,048	985,807
□ 총 비용(a-b)		-189,430	-193,219	-197,084	-201,026	-205,048	-985,807

※ 반장 위축률 향상 및 물가상승률 등 고려, 2차년도부터 상승률 2% 적용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연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구비)		189,430	193,219	197,084	201,026	205,048	985,807
합계		189,430	193,219	197,084	201,026	205,048	985,807

6. 추가의견: 없음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4. 28.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16호로 2025년 4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신길3동 작은도서관 폐관에 따라 영등포구 공립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작은도서관 폐관에 따른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 현행화(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5. 3. 13. ~ 4. 2.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종료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작은도서관의 운영 종료에 따라 주민들이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참 고 자 료

1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생략)

2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